

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의 건 서

(의안번호 제1713호)

-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입니다.

-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,
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, 여러분!

- 오늘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사안으로
신원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713호,
「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」 전부개정조례안에
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
 - 2020년 5월 제정된 대통령령 ‘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’에 따라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시민사회 발전위원회 등의 설치 근거와 권역별 NPO지원센터 등의 설치·운영 근거를 마련하고,

-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인정체계 구축, 비영리 일자리 지원 등을 위한 추진 근거, 공익활동 지원 시설의 설치·운영 및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.

- 서울시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제고하는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바입니다.
또한,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시민사회의 역할 및 책임성을 강화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과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.

-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.
감사합니다.

2020. 9.

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